

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6,773,885	8,303,217
일반회계	255,871,648	7,676,149
특별회계	20,902,237	627,067
기타특별회계	20,902,237	627,06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22,448	21,673
주택사업특별회계	514,000	15,4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21,000	33,63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07,912	15,237
주차장특별회계	282,073	8,462
수질개선특별회계	16,484,804	494,54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0,000	9,00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970,000	29,1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18,31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